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233
------	------

2025. 12. 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김형재 의원(찬성자 28명)
-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형재 의원)

1. 제안이유

-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심의위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었음. 이로 인해 심의위원 고착화 및 소위 '카르텔' 형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이에 조례 내에 심의위원의 임기를 따로 명시하여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4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공모사업 심의 시, 심의위원의 임기에 제한이 없음에 따라 과생되는 심의위원 고착화 및 카르텔 형성 문제를 방지하고, 심의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라 지적되는 카르텔 형성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문화예술 시장을 장악해 입시, 채용, 공모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조성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특히, 공적 영역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술인 공모사업에서 심의위원과 예술단체 간의 연결고리로 특정 예술인만이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좌절되고 예술계의 다양성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 추천 시 이해관계자 제척·기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문화예술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회복하고 모든 예술인이 공정하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현행 조례는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개괄적인 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등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규칙을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의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재단 내 모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내부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의 교부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별도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개정안이 제안한 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카르텔 형성 문제의 우려를 해소하고, 재단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다. 공모사업 심의위원의 임기 규정 추가(안 제14조)

-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활발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현장성, 전문성, 다양성을 갖춘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예술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는 먼저 매년 통합 심의위원회 풀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추첨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이때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심의위원의 제척사항을 검증하고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성별과 연령 등이 공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함.

###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

구분	예술지원 통합 심의위원회 풀 (예술지원정책팀)	사업별 심의위원회 (각 사업팀)
1	전년도 통합 심의위원회 풀 검토	사업별 심의위원 3배수 구성 및 제척사항 확인
2	통합 심의위원회 후보자 제척사항 검증 (문체부 협조)	추첨을 통한 심의위원 섭외 순위 확정 (윤리경영실 참관)
3	통합 심의위원회 풀 확정	심의위원 확정 및 심의 진행

- 실제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서울문화재단의 대표 예술지원 사업인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의 심의위원은 2023년부터 2025년 까지 3년간 총 282명으로, 장르 구분 없이 중복으로 선정된 심의위원은 총 33명이었으며 이 중 3년 연속 선정된 심의위원은 1명이었음.

## < 2023년~2025년 3개년도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중복 선정 심의위원 수 >

(단위: 명)

구 분	총 계	1회	2회	3회
심의위원 수	282	249	32	1

- 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2026년도 예술지원 통합공모부터 2년마다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 매뉴얼을 보강하고 부적격 대상 선정 방지를 위한 타기관과의 교차 검증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의 과정을 개선하고자 함.
- 또한,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라고 조례 내에 명시하여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힘.
- 다만, 동 개정안이 제시한 안 제14조의 제목을 ‘심의위원’에서 ‘공모 사업의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구체화하여 ‘재단의 사업’을 ‘재단의 공모사업’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심의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로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u>&lt;신 설&gt;</u>	<p>제14조 (심의위원) 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심의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u>&lt;신 설&gt;</u></p>	<p>제14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u>&lt;삭 제&gt;</u></p>
<u>&lt;신 설&gt;</u>		<p>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하 “<u>공모사업</u>”이라 한다.),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이하 “<u>위원회</u>”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u>&lt;신 설&gt;</u>		<p>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p>
<u>&lt;신 설&gt;</u>		<p>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p>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u>
<u>제14조</u> ~ <u>제18조</u> (생 약)	<u>제15조</u> ~ <u>제19조</u>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 지와 같음)	<u>제15조</u> ~ <u>제19조</u> (개정 안과 같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V.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대상 사업 등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지키고자 심의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은 유지하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 수정주요내용

- 재단의 공모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수정함(안 제14조).

##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직위원 10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33
----------	------------

제안년월일 : 2025. 12. 18.

발의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대상 사업 등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지키고자 심의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은 유지하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가. 재단의 공모사업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수정함 (안 제14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의 제목 “심의위원”을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문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lt;신 설&gt;</u>	<p>제14조 (심의위원) 재단의 사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심의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p> <p><u>&lt;신 설&gt;</u></p>	<p>제14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u>&lt;삭 제&gt;</u></p>
		<p>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p>
	<u>&lt;신 설&gt;</u>	

	<u>&lt;신 설&gt;</u>	<u>없다.</u> <u>③ 위원 위촉 방법 등</u> <u>위원회 구성 및 운영</u> <u>에 관하여 필요한</u> <u>사항은 대표이사가</u> <u>정한다.</u>
<u>제14조</u> ~ <u>제18조</u> (생 략)	<u>제15조</u> ~ <u>제19조</u>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 지와 같음)	<u>제15조</u> ~ <u>제19조</u> (개정 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 공모 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14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단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 공모사업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u></p> <p><u>② 재단 임원 또는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u></p> <p><u>③ 위원 위촉 방법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u></p>
<u>제14조 ~ 제18조 (생략)</u>	<u>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u>